

한국수의임상포럼

Korean Board of Veterinary Practitioners (KBVP)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수의임상포럼'(이하 '본회')라 하며, 영어로는 'Korean Board of Veterinary Practitioners (KBVP)'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전국 어디서나 보호자와 반려동물들이 수의사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상 수의사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수의 진료의 표준화, 환자 진료와 보호자 소통 기술 향상, 수의사와 보호자와의 올바른 관계 정립, One-Health & One-Medicine 확립하여 전파한다. 본회의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 (1) 임상수의사 교육
- (2) 보호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 (3) 학술대회 개최
- (4) 인터넷을 통한 수의사, 보조인력, 보호자 교육
- (5) 학술지, 학술 비디오 등의 제작
- (6) 홈페이지 통한 수의학, 반려동물 정보 제공
- (7) 관련 학술 단체와의 협력, 정보 교환, 인적 교류

제4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경기도 분당구 서현동 272-5 대한수의사회 3층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구성)

1. 본회는 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의사 일반회원과 정회원을 둔다. 본회의 행사에 참석한 수의사는 본회의 일반회원이 된다. 정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일반회원 중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정회원은 총회 의결권은 없으며 본회에서 정한 정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임원

제6조(임원)

1.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이사장 1명
 - (3) 부회장 3명 이상
 - (4) 이사 50명 이내, 그 중 약간 명을 지구 대표 이사로 한다
 - (5) 감사 1명

제7조(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의 선출 방법은 따로 정한다.
2. 이사장, 부회장 및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각 위원장은 부회장이 된다.

제8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다.

제9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모든 사업을 주재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이사회에서의 회의 운영 일체를 실시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제 17조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다.
4. 감사는 이 회의 재산 및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본회 임원은 모두 무보수로 한다.
6. 임원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항상 열심히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임원을 위한 연수 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임원 연수 교육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제10조(임원의 퇴직 및 휴직)

임원이 퇴직하거나 휴직하고자 할 때는 사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휴직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제명)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 (2) 본회의 임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 (3) 회비를 2년이상 체납할 때

제12조(명예회장 및 고문, 자문위원)

1. 본회에 명예회장과 고문 그리고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전기 전임 회장을 총회에서 추대한다.
3. 고문은 본회 발전에 공헌한 인사로 이사회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한다.
4.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5. 명예회장과 고문, 그리고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연임과 중임이 가능하다.

제13조(직원)

1. 이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유급 사무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사무국 운영은 이사회 승인에 의한 사무국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4장 회 의

제14조(총회)

1. 총회는 모든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3. 정기 총회는 회계년도 종료전후 2개월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이사회 의결 또는 이사 1/3이상의 요청으로 의장이 소집한다.
5.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총회의 성립)

총회는 재적이사 2/3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에게 해당 회의에 대한 서면으로 미리 의사를 표시한 사람과 출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서면으로 표결을 위임한 자는 참석자로 본다.

제17조(총회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1. 회무보고
2. 예산 및 결산
3. 임원 선출
4. 정관 개정
5. 사업계획

제18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단 및 이사로 구성하고 매년 2회이상 이사장이 소집한다. 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 총무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미리 규정한 경우 인터넷 협의도 이사회의 결정으로 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 없고 의결할 수 없다. 그러나 의장에게 해당 회의에 대한 서면으로 미리 의사를 표시한 사람과 출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서면으로 표결을 위임한 자는 참석자로 본다.
 - (1) 총회부의안건
 - (2) 연차대회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 (3) 본회 및 연차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 (4) 상벌에 관한 사항
 - (5) 기타

제19조(각종 위원회)

본회는 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 장의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위원회

제20조(위원회)

1. 이 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학술위원회
 - (2) 컨퍼런스위원회
 - (3) 원헬스위원회
 - (4) IT위원회
 - (5) 행사위원회
2. 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소속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4. 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세부 규정은 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친 별도의 세부규정에 따른다.
5.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대한수의사회나 정부로부터의 협조요청에 대한 사항 등을 조사·연구·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재원)

이 회의 재원은 임원회비, 찬조회비, 보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하고, 재정의 사용은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22조(회계)

이 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회비)

1. 임원의 회비는 연50만원으로 한다.
2. 정회원의 연회비는 연 5만원으로 한다.
3. 회비의 유효기간은 가입한 해로 한다. 가입 후 차 년도 회비는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10월 1일 이후 납부한 회비는 당해년도와 다음년도 회비로 한다.

제28조(재산의 구분)

1. 이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법인의 부동산 임차권
 -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출연한 재산
 - 4) 운영재산 중 이사의 결의로 기본재산에 편입한 재산
3. 이 회의 기본재산은 최초 등기 시 내용과 같다.

제29조(재산의 관리)

1. 제28조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 이 회의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 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0조(재산의 평가)

이 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7장 상벌

제31조(상벌)

이 회의 상벌제도를 둘 수 있다. 이 제도는 따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2조(법인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본회 재산은 별도 규정에 의해 분배한다.

제3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4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이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정관재정: 2015년 3월 15일

정관개정: 2019년 9월 5일